

## “법정교육관련 개정법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8조 (교육)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과 특성별 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에너지관리대상자, 시공업자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그가 선임 또는 채용하고 있는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담당기관·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3.12.30]

###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50조 (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

- ①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기간·과정 및 대상자는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04.7.12)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대상이 되는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에게 교육기관 및 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4.7.12)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에 대한 교육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9.8.19]

부칙 (제239호, 2004.7.12)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의 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로 등록 또는 선임된 자로서 계속하여 동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로 종사하는 자는 제50조제1항 및 별표 12의 개정규칙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에너지관리공단·시공업자단체·전국보일러설비협회 및 한국열관리사협회는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도 하반기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 8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별표 12]  
[신설 2004.7.12]

〈비고〉

- 1 난방시공업체 1종 기술자과정 등에 대한 교육과 목 교육수수료 및 교육통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 시공업의 기술인력은 난방시공업체 1종·제2종 또는 제3종의 기술자로 최초로 등록된 날부터, 검사대상기기조종자는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로 최초로 선임구조 및 기종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날부터 6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 3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가 해당 교육과정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는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 4 위 교육과정 중 난방시공업체 1종 기술자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난방시공업체 2종·제3종 기술자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중·대형보일러조종자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소형보일러·입력용기조종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5 산업자원부장관은 제도의 변경, 기술의 발달 등 안전관리환경의 변화로 효율성을 위하여 추가로

교육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의 기관·기간·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2조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 ①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기간·과정 및 대상자는 별표 3의 2와 같다.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대상이 되는 에너지관리자에게 교육기관 및 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별표 3의 2]

〈신설 2004.7.12〉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제22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육대상자	교육기관
에너지관리자 기본교육과정	1일	법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신고된 자	에너지관리공단

〈비고〉

- 1 에너지관리자 기본교육과정의 교육과목 및 교육수수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 에너지관리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최초로 신고된 연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 3 에너지관리자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다시 에너지관리자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광고문의 T.2679-6343

[www.sp-stack.co.kr](http://www.sp-stack.co.kr)

**新豊開發**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2동 10-3  
TEL. 051-294-8055~6 FAX. (051)294-8057  
H.P. 011-877-5389

## 연돌산업의 신개발 특수공법으로 차별화 선언!

신소재, 신공법으로 신풍이 환경문화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 사업품목

- 연돌 안전도 점검 및 내부정밀 사진촬영 결과서
- 연돌내부 특수 세척 공사
- 연돌내외부 FRP식 코팅 보강 공사
- 연돌내부 내화벽을 축조 및 부분 축조 공사
- 연돌외부 균형 부위(ST) 반도식 보강공사
- 연돌외부 안전용 등받이 고사다리 신설 및 교체공사
- 연돌외부 최상부 캡싸움 및 피뢰침 신설공사
- 연돌외부 (철골뚝)부식 및 누수부위 보강 입힘공사
- 연돌외부 특수 도장공사(대형집진기 스프레이식 도장공사)
- 연돌 철거 공사
- 기타 대형 APT 연돌 내외부 청 및 보강공사

### 연돌내부 JET CLEANING 목적

연소GAS중에 함유된 FLY ASH와 SOOT가 장시간 사용으로 내부에 부착되어 BOILER의 부하변동시 비산되어 공해를 유발하고 연돌의 내부에 부식을 일으켜 연소상태를 불안정하게 하므로 JET CLEANING으로 부착물을 제거하여 연소효과와 대기오염을 개선시키고 연돌의 수명을 연장과 동시에 경비절감에 그 목적이 있다

※연돌 청소시 검분진 100% 세척

저희 신풍개발은 구사의 연돌에 정확한 정밀진단과 합리적인 견적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